[2018.11.13.]

총학생회 회칙

1 장 총칙

1 조(명칭) 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본 회는 성서의 밀알정신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취함에 있어 지속적인 훈련과 진리 탐구에 앞장서 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대명제 아래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주력하고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기독교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설치) 본 회는 한국성서대학교 안에 둔다.

제 4 조(운영) 본 회는 회원에 의하여 성서적이며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원칙하에 본 회의 회칙에 의해 운영된다.

제 5 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교 학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6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회의 회원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사업계획 및 재정, 그 밖의 본 회 운영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는 갖는다.

제 7 조(구성)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운영위원회, 집행부, 전공학회, 동아리연합회, 유학생회, 장애인학우회로 구성한다.

제 8 조(학교 당국과의 관계) 학생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논의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총학생회장이 전체 학생을 대표하여 의견을 발표 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경우 해당학생은 자기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다.

제 9 조(활동제한) 본 회의 회원은 본교의 건학이념 및 학칙과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2018.11.13.]

2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10 조(지위)

1. 본 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
2.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총학생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그 직을 계승한다.
3.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 전 까지 총학생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자를 운영위원회가 전공학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4. (신분보장)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투표의 불신임 결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위에서 해임되지 아니한다. 투표는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이며 투표자 중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11 조(임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매 학년도 1월1일부터 익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임기 종료 전 당선된 차기 총학생회장 활동을 보장한다.

제 12 조(선출)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은 본 회칙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감독 하에 선출한다.

제 13 조(업무 및 권한) 총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본 회의 운영위원회와 집행부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관한다.
2. 집행부 임원의 임명 및 해임권을 갖는다.
3. 총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직속기구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임무완료시 총학생회장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4. 전체 사업계획서와 예산 및 결산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5. 본 회의 대외 활동에 있어서 대표권을 갖는다.
6. 본 회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 당국의 회의에 학생 대표로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장 운영위원회

[2018.11.13.]

14 조(지위) 본 회의 최고 운영기구이다.

제 15 조(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괄사무국, 전공학회장, 동아리연합회장, 유학생회장, 장애인학우회장으로 한다.

제 16 조(의장) 운영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며 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총학생회장이 그 직을 계승한다.

제 17 조(소집)

1.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2. 정기회는 매 학기 초에 의장이 소집한다.
3. 임시회는 의장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 18 조(업무 및 권한)

1.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2. 본 회 전체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한다.
3. 본 회 전체 예산 및 결산을 심의, 승인한다.
4. 학교 당국에 본 회를 대표하여 건의안을 제출한다.
5.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의 불신임 발의권과 집행부의 부장에 대한 해임의결권을 갖는다.
6. 본 회의 위원 중 자치기구에 속한 각 대표자는 학생자치기구의 재정 운영을 감사한다.

제 19 조(개회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장 집행부

제 20 조(지위) 집행부는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 21 조(구성)

1. 집행부는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총무 및 회계와 서기, 각 부장으로 구성한다.
2. 업무 수행을 위해 각 부장은 차장 최대 2인을 둘 수 있다.

제 22 조(업무 및 권한)

[2018.11.13.]

1. 총학생회장의 동의하에 소관업무를 집행한다.
2. 사업보고서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3. 업무수행 상 부 신설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와 학교 당국의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제반활동 집행을 위해 대외협력부, 언론홍보부, 열린복지부, 예배섬김부, 행정지원부를둔다.
   4-1. 대외협력부 : 본 회의 협력을 통해 대내·외적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4-2. 언론홍보부 : 본 회의 언론과 홍보 및 기획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4-3. 열린복지부 : 본 회의 학생복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4-4. 예배섬김부 : 본 회의 기독교 신앙생활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4-5. 행정지원부 : 본 회의 행정업무와 편의 서비스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5 장 전공학회

23 조(지위) 각 전공학회는 전공의 최고 학생기구이다.

제 24 조(구성) 각 전공학회는 해당 전공의 모든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25 조(회장 및 부회장)

1. 각 전공학회 회장은 해당 전공의 모든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2. 각 전공학회장은 해당 전공의 학생회를 대표하며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당과의 사업계획과 입장을 표현한다. (단, 부재 시 부학회장이 학회장의 권한을 대신한다.)

제 26 조(업무 및 권한) 각 전공학회는 본 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회칙과 조직을 가지고 해당 학회의 자치활동을 수행한다.

제 6 장 동아리연합회

제 27 조(목적 및 구성)

[2018.11.13.]

1. 제 2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우 간 화합을 도모하고 기독교 문화 창달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동아리연합회는 본 회에 등록된 동아리로 구성한다.
3. 동아리연합회는 자율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4.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28 조(회장 및 부회장)

1.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원 중에서 선출하며, 동아리장의 동의와 운영위원회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동아리연합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단, 부재 시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신한다.)

제 29 조(업무 및 권한) 동아리연합회는 각 동아리 활동에 관한 기획, 조정, 지원 등의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7 장 유학생회

제 30 조(목적 및 구성)

1. 유학생회는 제 2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우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한다.
2. 유학생회는 본 회원 중 유학생으로 구성한다.
3. 유학생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유학생의 입장을 표현한다.
4. 유학생회는 자율적인 유학생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 31 조(회장 및 부회장)

1. 유학생회장은 유학생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유학생회장은 유학생을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단, 부재 시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신한다.)

제 32 조(업무 및 권한) 유학생회는 유학생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회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유학생의 입장을 표현한다.

[2018.11.13.]

8 장 장애인 학우회

33 조(목적 및 구성)

1. 제 2조에 의거하여 본교의 학우 간 화합을 도모하고 지도력과 자치 능력을 배양한다.
2. 장애인학우회는 본 회원 중 장애인 학우로 구성한다.
3. 장애인학우회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장애인 학우의 입장을 표현한다.
4. 장애인학우회는 자율적인 활동을 위해 회장 1인을 둔다.

제 34 조(회장 및 부회장)

1. 장애인학우회장은 장애인학우 중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과반 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장애인학우회장은 장애인학우를 대표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단, 부재 시 부회장이 회장의 권한을 대신한다.)

제 35 조(업무 및 권한) 장애인학우회는 장애인 학우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회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을 하며 장애인 학우의 입장을 표현한다.

제 9 장 선거

제 36 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연직 운영위원회 위원 5명(각 전공학회장)과 운영위원회 추천 위원 10명으로 한다.
3. 선거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게 있다.

제 37 조(위원장)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추천하여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제 38 조(소집 및 해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중 소집하여 선거에 관한 업무 및 권한을 추진하며 선거를 실시한다. 당선자를 발표한 후 해산된다.

[2018.11.13.]

39 조(업무 및 권한)

1. 공고문 게시
2. 후보자 접수 및 등록
3. 정견발표 주관 및 후보자 토론회 주관
4. 후보자 선거운동 활동관리
5. 부정선거 감시
6. 투표 및 개표 진행

제 40 조(후보자 자격)

1. 후보자는 총학생회장 1인, 부총학생회장 1인으로 구성된다.
2. 총학생회장은 본 회의 회원으로 4학기(현 학기 포함)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3. 부총학생회장은 4학기(현 학기 포함) 이상을 등록한 자로 한다.
4. 후보자는 등록 시 직전 학기 수업의 2/3 이상을 자신의 전공과목 수업을 수강한 자로 한다.
5. 후보자의 직전 학기 평점평균이 2.7 이상인 자로 한다.
6. 학칙을 위반하거나 정학 이상의 징계 또는 유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7. 편입생 및 초과학기자는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 41 조(후보자 등록)

1. 소속 주임교수 후보등록 추천서 1부
2. 소속 학회장 후보등록 추천서 1부
3. 투개표 참관인 동의서 1부
4. 후보 추천인 명부 1부 (본 회 회원 중 150명 이상 추천으로 하며 다수 후보자일 경우 중복 추천이 가능하다. 단, 후보자는 회원에게 추천인 명부의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며 추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5. 재학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6. 반명함판 사진 1매(크기 3x4)
7. 후보자 공약서 1부

제 42 조(선거운동)

1.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 인증을 거친 후 투표전일까지 할 수 있다.
2. 포스터와 동영상 및 현수막은 후보자 임의로 제작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인증을 거친 이후 사용할 수 있다.
3. 인근 지역의 상점 및 관계기관의 후원은 후보자의 능력여하에 따라 받을 수 있고 제한을 두지 않는다.
4. 정견발표는 교목실과 교학처에 채플 및 수업시간 양해 등 협조를 득한 후 채플

[2018.11.13.]

각 후보별로 발표한다. (정견발표 형식 및 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정한 방침을 따른다.)

5. 후보자 토론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참여인원, 방법, 장소, 시간을 학교측 협의 후 결정한다.
6. 후보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기독교적 선거 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며 상대 후보자를 존중하며 비방하지 않는다.

43 조(투표)

1.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2. 투표시간은 08:30 ~ 21:00 까지 한다.
3. 투표자는 선거인 명부에서 명단 확인 후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한다.
4. 투표용지에 이중으로 도장이 찍히거나 후보자 간 중간에 찍힐 경우 무효 처리 되며, 기표도장 이외의 필기구는 모두 무효 처리한다.
5.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 2명과 참관인 2명이 있어야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6. 위 2항의 일정은 전염병,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4 조(개표)

1. 투표시간이 종료 후 각 후보의 참관인 2명, 선거관리위원회, 교학처 직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학처 내에서 개표를 진행한다.
2. 각 후보자의 참관인 미 참석 시 개표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무효투표 발생 시 각 후보자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회, 학생팀장의 동의하에 무효 처리 한다.

제 45 조(당선자의 결정)

1. 다수 후보자일 경우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단, 최고 득표수가 동일 할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2. 단일 후보자일 경우 유권자 재적인원의 과반수이상 투표해야 하며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기준 미달 시 재투표 한다.(재투표 시 후보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3. 단일 후보자 재투표 경우 유권자 재적인원의 절반이상이 투표해야 하며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단일 후보자 재투표에서 찬성득표를 못하거나 기준 미달 시 운영위원회 임시회를 소집하여 논의한다.)
4. 당선자가 결정 시 참관인 전체의 확인절차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를 익일 공고한다.

[2018.11.13.]

46 조(선거기간과 절차)

1. 공고 후 후보등록은 14일 이내로 한다.

2. 후보등록 인준 후 선거운동 기간은 14일 이내로 한다.

3. 위 1, 2항의 일정은 전염병, 천재지변 등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를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7 조(보궐선거)

1.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 그 잔여임기가 150일 이상인 경우 궐위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한다.

2.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된 때 그 잔여임기가 150일 미만인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각 전공학회장 중 1인을 추천하여 총학생회장직을 계승한다.

10 장 재정

제 48 조(원칙) 본 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 49 조(재정운영세칙)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정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 50 조(재원) 본 회의 재원은 총학생회비와 그 이자, 학교 보조금,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 51 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임원의 임기 년도로 한다.

제 52 조(예산)

1.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총학생회비로 지급되는 자치기구 지원금의 경우 지원을 받는 자치 기구에서 예산안, 결산안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문제가 있을 시 운영위원회는 해당 기구에 총학생회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 53 조(결산)

1. 재원을 집행하는 기구는 예산 집행 시 모든 경비에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회계 장부를 비치하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해야 한다.

2. 재원을 집행하는 기구는 재정운영세칙에서 정하는 통일된 양식에 따라 기입하여 관리한다.

[2018.11.13.]

3. 회의 재원의 잔액은 차기연도에 이월시킨다.
4. 학교 보조금은 집행 후 15일 이내에 학교 측에 영수증을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5. 각 자치기구는 학기를 종료한 후, 해당 학기 사용 지출내역에 관한 감사에 응해야 한다.

11 장 회칙개정

54 조(발의) 회칙 개정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정된다.

1. 총학생회장 발의
2. 운영위원회의 2/3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3. 본 회원의 1/10 이상의 연서에 따른 발의

제 55 조(회칙 개정안 공고) 회칙 개정안이 발의되면 운영위원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회칙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2. 신, 구 조문 대비표
3. 회칙 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 56 조(회칙 개정안 의결)

1. 회칙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은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출석, 2/3 이상의 찬성을 통해 의결된다.

제 57 조(회칙정리) 회칙에서 조항, 자구, 숫자 또는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통해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회칙의 본 의도를 훼손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58 조(회칙공포) 확정된 회칙 개정안은 3일 이내에 총학생회장이 공포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총학생회 재정운영세칙

[2018.11.13.]

1 장 총칙

1 조(목적) 제반 사업진행과 이에 따른 자금 운영에 있어 준수해야 될 관계 규정을 두어 투명한 학생자치기구 문화를 구축하고 학생자치기구의 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제 2 조(원칙)

1. 본 회의 재정 감사결과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감사는 본회의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장려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제 3 조(의무)

1. 감사위원은 감사기간 중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의무를 진다.
2. 피감사단위의 대표자와 재정 담당자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하여 감사인 대표의 요청 및 결정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진다.

제 4 조(정의)

본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자치기구라 함은 총학생회를 비롯하여, 각 전공학회 등 학생이 납부하는 예산을 직접적으로 수취하거나, 분배 받아 운영되는 모든 학생자치기구를 말한다.
2. 본 세칙에서 말하는 전체학생대표자라 함은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각 자치기구의 모든 장을 말한다.

제 5 조(적용대상)

본 세칙이 적용되는 단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자치기구(총학생회)
2. 각 전공 학회
3. 기타 학생이 납부하는 학생회비와 같은 예산으로 운영되는 모든 학생자치기구

제 2 장 증빙

[2018.11.13.]

6 조(통장명의) 명의는 해당 단위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거래금융기관의 거절 등으로 인하여 단위 명의를 병기하지 못하는 경우 전체 대표자 또는 자금 운영 대표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제 7 조(증빙원칙)

1. 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각 단위의 대표자는 자금 운영 시 거래 건 별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2. 모든 지출에 대해 영수증을 구비해야 하며,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이체영수증과 거래내역서를 구비해야 한다.
3.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에 대한 증빙이 어려울 경우, 간이 영수증에 의한 증빙을 할 수 있으며 간이 영수증에는 해당 업체의 연락처, 상호 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제 8 조(계약서, 견적서) 각 단위의 자금 운영 담당자는 계약서, 견적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이를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결산안)

1. 각 단위의 자금 운영 담당자는 수입 또는 지출을 반영한 결산안을 월별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개되는 결산안에는 자금 운영 담당자와 해당 단위의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2. 결산안의 양식은 별지 제 1호에 첨부된 양식으로 통일한다.
3. 결산안은 월 별로 기록해 두어야 하며, 기록된 자료는 각 자치기구마다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4. 결산안 공개는 매 학기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10 조(보관 기간) 모든 증빙 자료의 보관기간은 작성 시로부터 2년으로 한다.

3 장 수입

제 11 조(학생회비 수입)

1. 학생회비로는 개인적인 목적의 사업을 집행할 수 없다.
2. 학생회비로 집행한 사업에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

[2018.11.13.]

수 없다.

3. 학생회비를 관리하는 통장에는 학생회비 거래내역 이외에 다른 지출 내역을 포함할 수 없다.

4 장 분배

12 조(분배)

1. 총학생회비에서 지출되는 자치기구 지원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의한다.
2. 모든 학생회비의 분배 시에는 분배 내역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 13 조(공고)

1. 학생회비를 수취, 분배 받은 학생자치기구는 학생회비 납부자에게 사용내역을 공고할 의무를 가진다.
2. 공고에는 수입, 지출, 분배에 관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제 5 장 감사

제 14 조(구성)

1. 자치기구의 재정 운영에 관하여 감사를 진행하는 감사인은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 중 전체학생대표자로 둔다.
2. 감사 주체는 운영위원회 중 전체학생대표자가 되며, 상황에 따라 참관인을 둘 수 있다. 단, 참관인의 경우 본교 재학생에 한한다.
3. 전체학생대표자들이 모여 자치기구를 감사할 시, 감사 대상이 되는 자치기구 각 담당 대표자는 감사 주체가 아닌 피감사인이 된다.

제 15 조(대표자) 감사 진행을 대표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의장으로 한다.

제 16 조(감사 및 공고 시기) 매 학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사 결과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17 조(권리와 의무)

[2018.11.13.]

1. 학생자치기구는 본 세칙에서 정한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2. 모든 학생자치기구는 운영위원회 중 전체학생대표자를 중심으로 조직되어 진행되는 감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감사인은 회계 감사에 대한 전권을 부여 받으며, 담당 대표자 및 자금 운영담당자는 감사인들의 정당한 요구가 있을 시 성실히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8 조(보관) 해당 년도 감사에 관한 결과는 차후 감사를 위해 손실, 유실되지 않도록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9 조(적용범위) 본 세칙의 제 1장 5조에 해당하는 모든 자치기구로 한다.

제 20 조(증빙자료) 피감사단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감사 실시 3일 전까지 해당 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1. 결산안
2. 영수증(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간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간이 영수증에는 해당 업체의 연락처, 상호 명, 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통장사본 혹은 은행 직인이 찍힌 거래내역서

제 21 조(순서)

1.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감사를 진행한다.
   1) 증빙자료 완비 여부 확인
   2) 증빙자료 비교를 통한 수입, 지출 확인
   3) 재원의 목적성, 적정성 확인
   4) 피감사단위 자료 검증에 관한 감사인의 서명
   5) 논의 및 의결
2. 감사 진행 순서는 감사대표인이 결정하여 감사 시행 전에 공지한다.

제 22 조(감사보고서)

1. 감사보고서는 감사기간 동안 결정한 모든 사항을 기록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보고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재정 회칙 및 재정운영세칙
   2) 감사위원 명단
   3) 피감사단위 책임자 명단
   4) 감사결과
3. 감사위원 및 피감사단위 책임자 명단에는 학과, 학번, 이름, 연락처, 소속 및 직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감사결과는 피감사단위별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11.13.]

1) 명단
2) 결산
3) 증빙자료 불인정 항목과 그 사유
4) 이월여부
5) 의결사항

5. 감사보고서의 보안은 각 자치기구의 권한으로 둔다.

6 장 징계

23 조(징계수준 및 소명기회)

1. 재정에 관한 증빙자료가 불충분할 시 학생대표자는 공개 경고를 할 수 있다.
2. 그 외,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내 징계위원회에 인계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회의 최고 기구인 운영위원회 전체 인원의 2/3 이상 동의할 시 가능하다.
3.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의결 전에 징계의 대상이 되는 사람 혹은 기구에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018.11.13.]

칙

1 조(시행일) 회칙은 공포 후 2018년 11월 16일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종전의 한국성서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은 2018년 11월 16일 부로 폐지한다.

별 지 제 1호(수정)

0000년도 0월 (학회 명) 학회 결산내역 양식					
0월	회계	단가	비고	회장	회계

[2018.11.13.]

	이월금						
	수익금						
	지출금						
	잔 액						
날짜	구분	사업내역	결산			비고	영수증 번호
			수입	지출	잔고		
합계							